

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1366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한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변론 종결2023. 4. 27.

판결 선고2023. 5. 18.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 2. 7. 접수 제9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9241호(2020. 10. 15.자 위 법원 2020차전3040호 지급명령에 대한 C의 이의신청에 따른 본안 재판) 확정된 2022. 3. 17.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원금 160,000,000원)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E, F가 있었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1. 12. 24.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22. 2.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존재하여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C의 관계(母子),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시기와 내용, C의 재산상태와 채무 내용, 이 사건 협의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가압류 등기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김성대

별지